

정관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이하 “케이아트 법인”)”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케이아트 법인은 국제미술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미술을 외국에 소개하고 외국의 미술을 국내에 소개하여 미술문화 및 인적교류, 미술교육 및 저변확대, 사회서비스를 실현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 케이아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이사회 의결에 의해 법인의 분사무소를 교류국가에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케이아트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미술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2.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3. 미술의 저변확대와 후진발굴에 관한 사업
4. 청소년 미술교육증진을 위한 사업
5. 전시대행 서비스업
6. 미술품박람회
7. 전시시설기획
8. 문화전시관운영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본회의 수익사업의 수익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케이아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케이아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제9조(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회비를 3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발전 또는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이 큰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경고 등의 징계 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로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 반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재가입) 본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장 자산 및 회계

제13조(출자방법) 본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4조(재산의 구분) ①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목록은 표1과 같다.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

제15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민원사무전용

제17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8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1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시킨다.

제20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본 법인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1조(특별회계)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임원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 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제32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33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케이아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케이아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총회와 이사회)

제34조(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35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22조(수인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23조(회계년도) 케이아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4조(회계감사) 감사는 일반감사 및 회계감사로 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게는 필요에 따라 경비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26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케이아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1명 포함)
2. 감사 2인 이내

제27조(임원의 자격) 케이아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8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29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케이아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케이아트 법인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③ 이사장이 궐의 된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제37조(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①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38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내지 3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요구를 한 때

제43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제6장 사무국

제46조(사무국) 케이아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47조(직원)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사무국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9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총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보칙

제5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5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이사장) 허숙

이사 김병기

이사 김영준

이사 이두식

이사 이경순

이사 최득호

감사 김인준

감사 하의수

② 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52조(사업계획, 수지결산 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보통재산, 임원, 임원의 임기는 표1 내지 표2와 같다.
-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3. 5. 제정)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 3. 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1. 13. 제1차 개정)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01. 13.부터 시행한다.

이사장 허 숙 (서명 또는 날인)

이 사 최성원 (서명 또는 날인)

이 사 이인수 (서명 또는 날인)

이 사 권영희 (서명 또는 날인)

이 사 전준엽 (서명 또는 날인)